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7.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15호로 2013년 6월 2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주민불편살피미’의 활동이 저조하여 운영 폐지됨에 따라 활동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검토의견

-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순찰을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 4월 24일 제정·공포된 조례로, 주민불편살피미의 활동임무, 구성 및 활동기간, 위·해촉, 활동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 조례에 따라 2009년도 세출예산서 기준으로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 440명,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 300명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매년 운영에 따른 예산 1,000 ~ 1,800 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주민과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고,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용한 순찰의 어려움 및 사고 위험의 상존에 따른 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영라이너스는 2011년도에, 영롱이 순찰대는 2013년도에 운영을 폐지하였음.

○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120시민불편살피미, 구청장에 바란다 등의 각종 민원신고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2013년 3월 18일 구청장 방침으로 조례 폐지 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 검토결과 조례의 연혁과 체계, 내용과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유지하는 것보다 폐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사료됨.